

제10강 관세의 부과와 징수

강 의 : 관세청 정재완 박사



<주요 강의내용>

1. 관세의 확정방법
2. 부과고지의 대상
3. 납세액의 산출방법
4. 관세의 납부기한
5. 가산금제도
6. 가산세제도
7. 납세신고사항의 수정
8.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공무원교육원

1. 관세의 확정방법

신고납부제도
(원 칙)

부과고지제도
(예 외)

-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확정하고,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으로 관세를 확정하는 것

2. 부과고지의 대상

- 1) 예외적인 시기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
-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4)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이나 별송품
- 5) 우편물(미화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
- 6) 신고납부 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
- 7) 이사자의 이사물품
- 8)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3. 납세액의 산출방법(1)

◆ 관 세

[종가세] 과세가격(외화가격 * 과세환율) * 관세율

[종량세] 수입물품의 수량 * 단위당 세액

◆ 개별소비세

[일반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5-20%)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 교통세

수입물량(휘발유 등) * 교통세율(630원/리터)

수입물량(경유 등) * 교통세율(454원/리터)

◆ 주 세

[주 류]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5-80%)

[酒 精] 수입 물량(kl) * 단위당 주세액(57,000원+가산금액)

4. 납세액의 산출방법(2)

◆ 교육세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것]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단 석유제품 부산물은 15%

[교통세에 부가되는 것] 교통세액 * 교육세율(15%)

[주세에 부가되는 것] 주세액 * 교육세율(10%) 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

◆ 농어촌특별세

[관세 감면물품] 관세의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율(20%)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10%)

◆ 부가가치세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율

5. 관세의 납부기한

-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 부과고지의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 예외
 - 월별납부제도의 적용 : 매 월말단위로 말일까지 일괄납부
 - 천재(天災), 지변(地變)이나 전쟁,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큰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로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 분할납부 : 분할납부승인시 세관장이 납기를 정함
 - 환금특례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 일괄납부기간(분기, 4월, 반기) 익월말까지가 납기

6. 가산금제도

-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 세액외에 가산금을 추가 부과(제42조)
-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액의 3% 상당을 추가 (1차 가산금)
- ❖ 최고 60개월까지 매 1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액의 1.2% 상당을 1차가산금에 추가(중가산금) : 따라서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부과 가능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우편물(정식 수입신고 대상은 제외)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가산세제도

-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세액 또는 과세가격의 5%~30%) 제42조
- ❖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징수하는 경우
- ❖ 재수출면세(감면세)처분으로 수입한 물품을 규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 ❖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과세대상인 여행자휴대품 또는 이사물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즉시 반출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납세신고사항의 수정

구 분	수정 시기	수정 주체	가산세(금)여부
정 정	관세납부전	납세의무자	없 음
보 정	납세후 6월내	납세의무자	당해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10만분의13)
수정신고	보정기간 경과후	납세의무자	
경 정	보정기간 경과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 청구 (과다납부) •세관장 인지 (부족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오납 환급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의10%) + (당해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10만분의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 시 납세기한 : 당초의 납부기한 •보정/수정 시 납세기한 : 보정/수정 신청 다음날까지 			

8-1. 가산금과 가산세

구 분	부과 시기	수정 주체	가산세(금)여부
가산금	체납일부터		•(체납관세 × 3%) +(경과 월 수 × 1.2%) •최장 60개월 초과 못함(체납처분)
			•체납관세 100만원 미만은 중가산 적용 않함`
가산세	수정/경정시		• (추가납부세액의 10%) + (당해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10만분의13)
	부당한 과소 신고에 의한 추징시		•(당해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일수×10만분의 13)+(추가납부세액의 40%)
<p>법241조 : 보세구역장치기간(30일) 경과(법 241조) 과세가격의 100/2 범위내에서 가산세 징수</p> <p>령(248조) : 기한경과 20일/50일/80일 이내 및 이후 1000분의 5/10/15 및 20</p> <p>가산금은 500만원 초과금지</p>			

8-2. 결손처분

-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의무를 없애는 것
 - 시효결손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세의무 소멸
 - 불납결손 :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
- * 불납결손 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점에서 징수권 소멸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분됨

8-3. 과오납금의 처분

-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 이는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돌려줌
- 환급 : 신청에 의한 환급, 세관장 인지에 의한 환급
- 충당 : 환급 받을 자가 미납한 관세 등이 있을 경우 환급금으로 충당
- 양도 : 환급 받을 자는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과다환급금 징수 :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
- 환급가산금 : 과오납부한 날로부터 환급/충당 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9-1. 납부의무 소멸

- 납세의무의 실현에 의한 소멸 :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납세의무 미실현 상태의 소멸
 - ✓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 ❖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 제척기간도 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 그러나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름

9-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원칙적으로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이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가 제척기간이 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받은 경우
 -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신고를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특례 :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이의/심사/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

10.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관세징수권(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종전 3년)
- ◆ 수출물품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종전 2년)

- 다음의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납세고지
 - 경정처분
 -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 통고처분
 - 고 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소제기
 - 교부청구
 - 압 류

11. 납세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 인정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되어 있는 건물, 시설재, 선박 등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1호와 7호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함
 - 체납시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잔액은 교부/공탁), 납세보증의 경우는 그 보증인에게 잔액 교부
 - 담보가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름